

## 조 · 일간의 복식 교역품 중 은수입품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

이자연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 The Effect of Imported Silver Goods on the Chosun Society among Chosun-Japan Trading Clothes Goods

Ja-Yeon Lee

Major in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ed silver goods from Japan and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importing, trade items, and the amount of the exchang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mporting silver on Chosun society. A large amount of silver was imported from Japan and the amount of imported silver reached its maximum in Chosun Dynasty. Japan, on the other hand, imported a large quantity of cotton cloth from Chosun Dynasty. Silver was imported mainly because of the sumptuous moods among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The moods were spread out to general people who made them wish for the luxurious and expensive Chinese goods. To buy the luxurious goods, a lot of silver was imported from Japan. Importing a large quantity of silver fostered the sumptuous moods and also caused the price increase in the Chosun society. The order of the society became worse because of the individual trades of rich merchants who were closely connected to high officials.

**Key words:** silver imported, trading goods, luxurious goods, rich merchants

## 1. 서 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간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이들 두 나라간의 통상외교를 통하여 파생된 복식 교역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은수입품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선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조일사신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던 조선의 대일외교관계와 교류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조일간의 교역품과 그 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복식 교역품 중 은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즉, 조선에서 일본의 은을 수입하게 된 배경과 거래내역 그리고 교역량에 관하여 살펴본 후, 셋째, 일본으로부터의 은 수입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조선사회의 제 현상을 검토하여 보고, 은의 조선사회 내에서의 위상에 관하여도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사료 등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고찰한다.

## 2. 조일간의 외교와 교류

### 2.1. 조선의 개항과 대일관계

조선시대 초,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정부의 금구정책의 하나로 취해진 회유책과 일본 국내의 남북조 재난의 수습과 막부의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활발해 졌다. 일본에서는 막부의 사행인 국왕사, 영주의 사행인 제주사, 대마도의 사객과 도민, 왜상 등의 왕래가 빈번하여지고, 그 수도 날로 증가해 갔다. 이와같이 왜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이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인 여려가지 폐단으로 말미암아 포를 한정하여 태종 7년(1407)에 당시 경상좌우도도안무사영(慶尙左右道都安撫使營)의 소재지인 부산포와 내이포가 최초로 개항하게 되었다. 그 후 염포와 가배랑의 두 곳을 추가로 개항하여 4개 처가 개항지로 지정되었다.

태종대에는 태조, 정종 때에 정식 개항의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 2개 처를 열고 추가로 다시 2개 처를 열어 왜인들에 대한 개방책과 후대책을 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의 행패는 그치지 않았으며, 왜구의 활동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세종 원년(1419)에는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포구는 폐쇄되었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대마도 정벌로 통교가 단절되었던 대마도는 산악이 많아 경작지가 매우 적고, 도민은 항상 침탈과 상업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조선에서의 단교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고통은 극심하였다. 대마도 정벌이후 세종 원년(1419)

Corresponding author; Ja-Yeon Lee  
Tel. +82-53-309-5456, Fax. +82-51-309-5736  
E-mail: jylee@silla.ac.kr

9월에 대마도주는 조선의 예조판서에게 항복을 청하고 인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토산물을 헌상하였으며(세종실록, 원년), 12월에는 국왕사가 통교를 중용하였다. 세종 4년(1422) 9월에는 대마도주 종정성이 귀순을 고해 오자 여기에 정부는 종래의 강경책을 버리고 완화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동년 9월에 대마도주가 토산물을 헌상하자 참찬 허조는 상계하여 그 사신을 후대하고 그에 대해 회사하도록(세종실록, 4년) 하였으며, 왕도 이에 따르겠다고 한 사실은 유화책으로의 전환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일본에 대하여 강경책을 취해오던 태종이 서거함으로써 통교왕래는 급전되어 선박의 호송과 홍리무역 등을 허락해주었는데 세종 5년(1423) 4월에는 부산포와 내이포를 개항하였다. 세종 8년(1426) 정월에는 대마도의 청원으로 염포까지 개항하므로써(세종실록, 8년), 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가 개항지로 지정되어, 여러 곳에서 사송하는 왜상들은 이 삼포를 통하여 내왕하게 되었으며(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삼포는 조일 간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

삼포를 통하여 들어오는 일본선박의 종별은 일반적으로 세견선이라는 세약선, 홍리선, 홍관선 등의 무역선과 그밖에 사절의 임무를 띠고 들어오는 사송선인 국왕사선, 구주탐제사선, 그리고 제 지방거주사선 등이 있다. 세종 25년(1443)에는 대마도주와 이른바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무제한 요구하는 물자공급을 통제하고, 해마다 물자를 얻기 위하여 조선에 파견하는 세견선의 수를 50척으로 제한하며, 매년 조정에서 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두는 200석으로 할 것 등,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약간의 특송선을 보낼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조정은 도주에게 입국사증서인 도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것을 갖지 않으면 대마도와 일본 각처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일본선박의 출입상황에 관하여는 조선건국 후 일본배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 중종5년(1510) 삼포왜란까지 부산포를 출입한 일본선박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포에는 막부장군의 국왕사선과 호족의 거주선, 구주절도사선, 대마도선, 수직인선, 수도서인선 등 세견선의 허용된 것과 조약을 맺은 각급 선박의 총수는 204척 내지 218척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이현중, 1964). 이밖에 일시적으로 내왕한 것을 합하면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종 11년(1479)부터 선조 21년(1588)까지의 약 100여 년간 조선에 건너온 일본의 사절은 총 1634회에 달하며, 그 중 일본국왕사가 파견된 것은 31차례에 이른다고 한다(한문중, 1996).

한편, 조선에 내조한 일본인의 수를 보면, 사행에 따른 규모 차이,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세종 6년(1424)의 국왕사행에 대해 보면, 송선 16척에 52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수가 도래하였으며, 세종21년(1439) 한해 일본인의 도래수는 5500명 내지 6000명에 달한다(세종실록, 21년)고 한다. 이러한 추정은 세조 원년(1455) 한해에 일본 여러 곳의 사송왜인이 6000명이나 도래하였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이현중, 1964).

## 2.2. 조일간의 교류와 교역품

조선 초기 태종대부터 개항한 이래로 일본과의 통교가 활발해지게 되자 일본 사신의 내왕이 빈번하였으며, 여기에 일본의 대조선 무역은 가일층 증가되었다.

대일 간의 무역형태는 일본이 조선의 왕에게 물품을 헌상하던 조선 측이 답례로 회사품을 보낸 경우로, 조선전기의 일본으로부터 온 교역물품은 전부가 진상에 해당된다. 한편 진상품을 실은 일본선이 삼포에 도착하면 격식에 따라 영접수속을 하여 사자일행을 상륙시켜 왜관에 유숙하게 하고 국왕사 거주사의 경우는 중앙에 보고하여 출영하게 하였다. 상례의 사신인 경우에는 매년의 도선 수를 조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인원수와 함께 물품을 서울로 보내게 되며,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동평관에 체류하게 되고 사신은 서계와 진상물을 예조에 바친다.

진상품을 받은 예조와 호조에서는 당하관들을 시켜 물품을 조사한 뒤에 시기에 준하여 상당한 대가의 회사품을 내린다. 이 경우에는 사행이 희망하는 물자를 주는 것이 보통이며, 이 일이 끝나면 사행은 돌아가기 위해 포소로 간다. 조선의 포소에 도착하였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포소로부터 항해기간 중의 식량까지도 급여 받았는데, 그들이 입국하면 본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은 조선의 부담이었다. 한 예로 세종 21년(1439)왕과 허조와의 대화 가운데 국가에서 사급하는 곡량이 10,000석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세종실록, 원년).

삼포의 왜관에서 교환된 물자는 화원창(경북 달성군 화원면)에 운반하여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 보내져서 민간에 방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역의 질치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으며, 초기에는 관의 통제 하에 있었지만 포소와 서울의 왜관에서 상인과 직접 교역하는 것도 허락되고 있었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조일간의 교역은 조선은 피동적이고 반대로 일본은 적극적이었으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주요품목은 금, 은, 동, 유황 등 일본의 산출물과 동남아시아지역의 중계품인 소목, 호조, 약재 등이었다. 이러한 물자는 일반 서민생활의 필수품이 아니고 정부, 왕실, 귀족들의 수용품이었다. 즉 소목은 의복, 잠리복 등 각종 예복의 염료가 되었으며, 호초는 약용으로 또는 귀족들 기호의 조미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약재는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하고 부족분은 보충하였다.

조선에서 수출되는 물자는 면포, 저포, 마포, 주포 등의 직물류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는 대마도 지역으로 공급되는 쌀, 콩 등의 곡물이었다.

## 3. 은교역의 배경과 거래내역

### 3.1. 은 수입의 배경

은의 소비를 보면, 은은 주로 궁중을 비롯한 상류사회에서 소비가 많았는데, 그 용도로는 주거나 수저와 같은 기류 그리고 관대, 이환, 비녀 등의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궁중에서는 사여물로도 사용이 되었다. 특히, 명에 대한 세공으

로 다량이 소비되었는데, 조선은 정조사, 성철사 등의 사철을 명에 파견하여 그 예물로서 금, 은과 토산물을 진헌하였다. 금, 은은 국내에서 거의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정부는 명에 대해 금, 은의 면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그 결과 세종 11년(1429)에는 면공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중종실록, 35년).

정부의 명에 대한 금, 은 면공요청의 주요 이유는 금, 은이 조선의 산출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이후 조선정부에서는 금, 은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금, 은의 해외유출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금, 은의 중국으로의 유출은 재차 금, 은 공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초부터 명의 공물을 충당하기 위해 행해졌던 국내 광산의 적극적인 개발도 면공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금지되고 사채도 엄격히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왕실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풍조로 인하여 다량의 중국산 물품 특히 사리능단, 약재, 서적 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지배층에 의해 기존의 금, 은에 대한 금제가 점차 해이해지게 되고 금,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국내 광산개발도 시도되었다.

특히, 1503년 김감불 등에 의해서 납을 사용하여 은을 제련하는 방법이 발견되었으며(연산군일기, 9년), 단천 등 국내 광산의 개발이 본격화되어 은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의 국내생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실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성향이 저변 층으로 까지 확대되고 사치품의 고급화가 추구됨에 따라 중국산물을 무역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은이 조선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출되어 은 부족현상을 맞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중앙재정이 은에 의해서 운용되었으며 국내 유통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은의 흡수력은 대단하였다. 이렇듯 은의 유출량이 많아지면서 부상층은 은의 부족을 납곡채은(納穀採銀), 무곡채은(買穀採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했다(중종실록, 28년).

한편, 15세기 중엽까지 조일교역의 주요 수입품이었던 소목의 거래가 소목 생산국인 동남아시아 각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또한 조선 지배계급의 사치성향이 점차 적색의복의 선호에서 화려한 중국산 비단을 비롯한 당물로 바뀌게 되자 점차 그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국내의 광산 개발 붐으로 인하여 다량의 은이 석견, 단마 등지에서 생산되면서 막대한 양이 산출됨에 따라(小葉田淳, 1969), 자연히 수요가 많은 조선으로 수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견포, 마포와 같은 직물류는 생산되고 있었으나(김병하, 1969), 목면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였는데, 경도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이 대량 사용하게 됨에 따라(이정수, 1998) 일본국내에서의 면포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일본 사신들이 면포사여(세조실록, 1년; 세조실록, 10년)를 요구하는 등 면포수입을 원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은을 결제수단으로 삼아

다량의 면포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으며, 조선은 15세기 중엽까지 이루어진 소목수입과는 달리 일본에서 은을 대량 수입하게 되면서, 은의 거래량이 최고치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일무역은 기존의 면포 대 소목에서 면포 대 은 교역체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 3.2. 은의 거래내역과 교역량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은의 유입은 조선과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는데, 실제 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은수입이 급증한 것은 중종 20년(1525)이후이고, 중종 33년(1538) 8월 영의정 윤은보의 계에 문금래왜인 지특은양이 불특타물(聞今來倭人 只特銀兩而 不特他物)(중종실록, 33년)이란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있어서 은은 중요한 거래 대상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록으로는 같은 해 10월 소이씨(小貳氏)의 사인이 은 375근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중종실록, 33년)이 있으며, 중종 37년(1542) 일본 국왕사 안심동당(安心東堂)이 은 8만냥을 가지고 왔고(중종실록, 37년), 이듬해도 연이어 일본국왕사와 사신이 많은 양의 은을 가지고 와서(중종실록, 38년)교역해 간 물품이 산더미처럼 많아 왜선 3-4척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중종실록, 39년) 그 거래량이 막대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당시에는 사신들에 의한 공무역보다는 사무역, 밀무역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공사무역의 수량을 합치면 엄청난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 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국내의 은가가 급격히 하락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종33년(1538)의 은가는 1냥 당 면포 4필이었으나, 1542년에는 은 1냥 당 면포 0.5필에 불과하였을 정도였다.

이와같은 은가하락의 결과, 중국행 사행들이 일본의 은을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명과 교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또한, 국내의 은가폭락으로 인해 정부와 일본사신 간의 교역에 있어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결국 1544년에 사랑왜변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중종실록, 39년). 한편, 일본 사신들은 조선국내 은가가 급락하여 이윤이 급감하고, 조선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명종실록, 6년) 원활한 무역이 힘들어지자, 조선보다는 중국, 남방과의 은 무역이 훨씬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점차 무역로를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즉, 당시 일본과 중국의 교역이 활발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은과 중국의 생사가 주 교역품이었는데, 일본은 연간 600만냥 정도의 은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였다.

이와같이 중국남부 연안간의 교역량은 급증하게 된 반면, 조선과의 은교역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명종 1년(1545)의 경우, 일본국왕사 안심동당 등이 가져온 교역품 중에 은은 교역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 3.3. 은수입품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사치풍조 조장** : 16세기에 들어와 일본 은이 조선으로 대량

들어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그 횟수와 물품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에 따라 사치의 초점도 일본산 물품에서 중국산 물품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때 왕실 등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풍조가 점차 확산되면서, 점차 지배층의 사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급 사치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조선에서 가지고 간 교역품으로는 일본에서 수입된 은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은이 촉매작용으로 사용된 조선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어떤 물품을 조선이 주로 수입하였으며, 그 물품들은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고, 물품의 소비 정도를 넘어서 사치에 이르기까지 그 사치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과 중국간의 교역 시,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약재, 궁각, 서책, 장복 등의 물품이외에 백사, 백저포, 사라능단 등의 직물류와 주취, 보구, 마노 등 보석류를 대량 수입하였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사라능단이라는 화려한 중국비단이었다(한상권, 1983). 조선에서 사라능단의 사용처를 보면, 상의원의 어의, 관패, 제용감의 제함소장구, 의장, 내수사 내인들의 풍정, 곡연시 관복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으며(중종실록, 35년), 또한, 당상관이상 관리의 상복은 사라능단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외에 궁중의 대비, 중궁 및 내외명부들의 의복에도 사라능단의 문채나는 고급 비단을 사용하였다(중종실록, 11년).

이와같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해 한정된 용처에만 사용되던 사라능단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물량의 공급이 원활해지자,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왕실 이하 관리들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고급 비단을 즐겨 착용하였으며, 중종대 이철균이 「(방금경상사치)方今競尙奢侈 의복개용사라능단(衣服皆用紗羅綾緞)」이라고 한 것과 「고척국가불귀당물(古則國家不貴唐物) 금척서인역개용지(今則庶人亦皆用之)」(중종실록, 11년)라는 김양진의 지적에서도 사라능단의 수요가 이전처럼 소수의 귀족층에 국한되지 않고 서민층에까지 확대되어, 서민들도 중국물품을 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녀자들은 중국산 사라능단을 선호하여 고가의 비단 때문에 집안이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에 대하여 신응기는 「부녀향직필단당일금 사직조급능라사매자 선립법일금(婦女鄉織匹段當一禁 私織造及綾羅私賣者 宣立法一禁)」이라 하여 금단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권26, 11년). 향직필단의 착용은 물론 사장들의 직조, 판매까지도 법으로 금하지는 내용으로, 당시 중국에서의 수입뿐 아니라 직조도 하였으므로 보아 고급비단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사치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혼인 시 사치의 정도가 심하여 「혼수의 과다함이 날로 심하여 혼기를 앞둔 집안은 혼수 경쟁에 여념이 없다. 포물을 가지고 은과 교환한 다음 역관들에게 청탁하여 당물을 구매해 오도록 하는데.....」라는 기록(중종실록, 35년)에서와 같이 혼인 시 능단, 금육과 같은 고급 사치품만 사용하는 등 복식에

대한 사치정도가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치의 폐단은 점차 조선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시기에 반포된 검약령의 내용이 주로 중국산 사라능단과 혼수의 사치를 제한한다는 것이고 그 횟수만도 성종대 6회(6년2회, 8년1회, 9년1회, 22년1회, 24년1회), 연산군대 4회(3년1회, 4년2회, 8년1회), 중종대 18회(3년2회, 4년1회, 11년5회, 13년1회, 23년1회, 24년1회, 25년1회, 32년1회, 33년1회, 35년1회, 36년3회), 인종대 1회(1년1회), 명종대 4회(4년1회, 7년1회, 8년2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라능단 및 복식에 대한 사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금령이 중종 1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5차례나 반복하여 반포되는 등, 수차례에 걸친 금령을 통하여서도, 복식에 대한 사치는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 사치성향의 심각성을 대변하여 준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사치풍조는 중국과의 교역과 사신들에 의한 사치품 수입에 의해 기인한 것이지만,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은유입 결과로 이러한 사치풍조를 더욱 조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물가등귀현상** : 일본으로부터의 은수입의 여파로 기인된 지배층에서의 사치풍조는 점차 사회 저변층으로 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여, 서민층들도 중국의 고급물품을 착용하는 풍조가 나타나 이러한 경향이 물가의 등귀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홍식의 진언에서 알 수가 있다. 즉, 「근래에 민간의 의복이 사대부의 것과 견주므로 물가가 마구 오르고, 혼인할 때에 납채에서 사라능단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혼기를 놓쳐 장가와 시집을 못드는 자가 다분히 있습니다」라는 기록(연산군일기, 3년)이 있다. 이것은 혼인을 사치스럽게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를 본받아 혼인 때에 사라능단을 많이 쓰고 서민들의 의복도 사대부와 견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이 물가가 등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현보의 「사치스러운 혼인도 전일에 금단했지만 실행되지 않으니 이번에 거듭 밝혀야 합니다. 사치가 날로 심해져서 물가가 날로 뛰어오르니 이리다가는 뒷날에 반드시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라는 언급과 같이 사치의 정도가 심하여, 모든 물가가 등귀하여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내의 사라능단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물가가 등귀한 만큼 그 수입가격이 올라가자 국내산 비단인 향직비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정부서는 사라능단의 직조법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전수시키고(연산군일기, 11년), 그 기술도 민간에까지 전수시키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민간에서는 뽕나무 재배가 확산되고, 향직 비단의 직조기술이 향상됨과 함께 그 생산량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조선의 양잠업 발달 및 방직기술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복식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번 올라간 생활수준을 다시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수많은 사치금령과 검

약령의 발표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와같이 사회제반 분야에 걸쳐 사치풍조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현상이 야기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봉건적 신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부상대고의 출현과 정경유착현상** :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양국 모두 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선호로 공무역 뿐 만이 아니라 사무역도 성행하게 됨에 따라, 사무역을 하는 부상대고들이 생기게 되었다. 부상대고란 서인, 천인출신의 사무역을 수행하는 상인세력으로, 이들이 사무역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치품무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었다. 즉, 부상대고들은 일본상인과의 무역에서 2-5배나 되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기에 삼포주변에 거점 지역을 두고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왜상들과 밀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외무역활동은 1540년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종 37년(1542) 일본에서 들여온 은의 유입량을 보면, 일본 국왕사 안심동당이 한번에 가지고 온 은의 양이 8만냥에 이르며 당시 사무역에 의한 은의 유입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중종실록, 37년), 사무역에 의한 규모는 막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당시 부상대고층이 대외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상대고들은 이러한 이익으로 인해 정부의 금은령에도 불구하고 특권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사무역, 밀무역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부상대고들의 사무역 행위는 조선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이정수, 1998). 즉, 위에 언급한 사치풍조와 물가의 등귀현상을 초래하였고, 또한 생산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리고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여 국익을 훼손시킨다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의 윤리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점 등이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무역에 대해 엄격한 금령을 적용했지만 근절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부상대고는 많은 경우 고위관료층과 혈연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상대고가 고위관료층과의 유착관계에 있었던 경우의 기록을 보면, 보현이라는 자가 승지 정성근에게 밀고한 내용으로 「부상대고들이 금하는 물품을 많이 가지고 몰래 삼포에 가서 밤에 왜인들과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양에 돌아와 있으니 즉시 붙잡아 와야 마땅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도망하여 숨을 것입니다(성종실록, 24년) 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의금부에서는 보현의 밀고 내용을 조사하던 중에 김파회의 부친인 귀산이 당시 예조판서였던 노공필의 첩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노공필은 이전에 제포첨사에게 서간을 보내어 파회의 사업이 잘되도록 편의를 봐줄 것을 청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국왕인 성종의 배려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노공필이 부상상이었던 김파회를 비호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공필과 정승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조일무역에 있어서 부상대고들은 고위 관료층과 혈연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착관계에 있는 정경유착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의 대일외교관계와 교류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복식 교역품 중, 은을 중심으로 수입의 배경과 거래내역, 교역량에 관하여 검토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은 수입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조선사회의 현상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15세기 중엽까지 이루어진 일본으로부터의 소목수입과는 달리 일본에서 은을 대량 수입하게 되면서, 은의 거래량이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양을 수입하게 되었다. 대신 일본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은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다량의 면포를 가지고 갔다.

은의 수입배경을 보면, 단천 등 조선국내의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어 은 산출량이 급증하였지만, 왕실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성향은 저변층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치품에서도 고급화가 추구되었다. 사치품의 고급화현상은 사리능단과 같은 고급 중국산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조선국내에 유입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치품의 구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은유입은 조선과 중국무역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어, 조선사회내의 사치풍조를 더욱 더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제반분야에 걸쳐 사치풍조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더구나 고위관료층과 혈연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착관계에 있었던 부상대고들의 사무역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여 국익을 훼손시킨다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의 윤리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점, 봉건적 신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점 등 조선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 은의 조선유입은 은을 결제수단으로 한, 조 · 중 · 일의 동아시아 무역권으로 발전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하 (1969) “이조전기대일무역연구”. 선일인쇄사, 서울, p.47.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시사”. 부산직할시, 부산, pp. 638-639, p.647.  
 이현중 (1964) “조선전기 대일 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서울, pp.66-67, 79-82.  
 이정수 (1998)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대사학*, 22, 13-28.  
 한문중 (1996)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상권 (1983)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344.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계축조.  
 성종실록, 24년 2월 정사조.  
 세조실록, 1년 7월 정유조.  
 세조실록, 10년 9월 정축조.

세종실록, 원년 9월 입술조, 원년 9월 계해조.  
세종실록, 4년 9월 병인조.  
세종실록, 8년 10월 임신조.  
세종실록, 21년 5월 신유조.  
연산군일기, 3년 10월 기축조.  
연산군일기, 9년 11월 정축조.  
연산군일기, 11년 12월 신미조.  
중종실록, 11년 10월 무진조.  
중종실록, 11년 5월 기유조.  
중종실록, 35년 8월 입술조.  
중종실록, 28년 6월 을미조.

중종실록, 33년 8월 기미조.  
중종실록, 33년 10월 기사조.  
중종실록, 35년 7월 병진조.  
중종실록, 35년 12월 기사조.  
중종실록, 37년 4월 경오조.  
중종실록, 37년 7월 을축조.  
중종실록, 38년 3월 병인조.  
중종실록, 39년 4월 을유조.  
중종실록, 39년 7월 을축조.

小葉田淳 (1969) “金銀貿易史の研究”. 법정대출판국, 일본, p.109.  
(2005년 1월 10일 접수)